



: 2018-07-2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Redacted]
검 사 백수진(기소),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Redacted] (국선)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2:50경 부산 부산진구 [redacted] 에 있는 피해자 [redacted] 이 운영하는 [redacte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redacted]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edacte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드러난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기존의 범행 수법 역시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거의 없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담배 2갑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2018-07-24

판사 신형철 _____